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5. 29 선고 2014가단3576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5. 15.

판결 선고 2015. 5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파주시 C 전 2093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(ㄱ) 부분 지상 시멘트벽 블록조 양철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1동 40㎡과, 같은 도면 표시 5, 6, 8, 7, 5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(ㄴ) 부분 지상 조립식 판넬 지붕 무허가 화장실 6m² 및 같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(ㄷ) 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테이지붕 무허가 창고 시설 4㎡의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, 그 외 마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13, 14, 15, 16, 13의 꼭지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100m'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이 파주시 C 전 2093m²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이금진

별지

1)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이 파주시 C 전 2093m²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; 최초 소장 첨부된 별지 도면 부분의 인도청구